

문서번호	시민활동지원과-292	시 민			
결재일자	2013. 2. 1.	주무관	시민활동지원과장	총무부장	한강사업본부장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손현경	이경수	김윤규	02/01 한국영
방침번호		협 조			이재덕
		운영부장			이용태
		공원부장			김만수
		시설부장			



2013년 한강자원봉사자 시민표창 운영계획

2013. 1.

한강사업본부
(시민활동지원과)

사전 검토항목

:::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표시)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● 시 민 : 유 (시민표창) 무
	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() 무
	● 전 문 가 : 유 () 무
	● 음 브 즈 만 : 유 () 무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● 법 령 규 정 : 교통 □ 환경 □ 재해 □ 기타 (서울특별시표창조례) 무
	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□ 노동인지 □ 균형인지 □ 홍보 □ 취약계층 □ 성인지 □ 장애인 □ 디자인 □ 갈등발생 가능성 □ 유지관리 비용 □ 무
	● 중 양 부 처 : 유 () 무
타 자 원 의 활 용	● 민 간 단 체 : 유 () 무
	● 기 업 : 유 () 무
	● 관 계 기 관 : 유 () 무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민 간 단 체 : 유 () 무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() 무

2013년 한강자원봉사자 시민표창 운영계획

한강의 보존과 이용활성화에 공헌한 바가 큰 한강자원봉사 시민과 단체를 적극 발굴·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, 많은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여 시민의식 함양 및 한강발전 도모

I 표창 개요

1 관련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79조, 서울특별시 표창조례
- 2013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(행정과-1857호, 2013.1.18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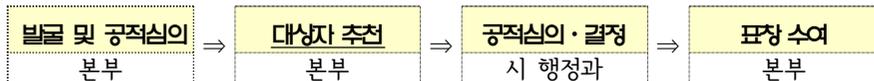
2 표창대상 : 한강 자원봉사자 시민(개인 및 단체)

3 표창종류 및 시기 : 자원봉사박람회(6월경), 활동평가회(12월경) 계기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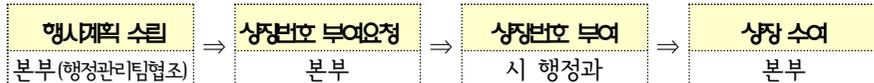
표창장 (6·12월)	▶ 한강보존 및 이용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 시민
감사장 (12월)	▶ 물품기부, 재난·재해 복구활동 등 감사의 뜻으로 전달
상장 (12월)	▶ 활동평가회 등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원봉사자 시민

4 표창절차

- 표창 추천권자 : 한강사업본부장(조사자 : 담당 부서장)
- 표창장 및 감사장



- 상장



II 문제점 및 개선사항

1 최근 4년간 한강자원봉사자 표창

(단위:개)

구분	합계	표창장	
		표창추천	표창수여
2009년	1	단체1(선유도)	단체1(선유도)
2010년	0	-	-
2011년	1	단체1(강서)	단체1(강서)
2012년	0	단체1(북극곰,셋강)	-

※ 감사장, 상장수여 실적 없음.

2 시민표창 추천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

- 표창 상신 대상자 선정 관련 객관적 공적심사 기준 부재로 대상자 임의 선정
⇒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적심사 기준 및 절차 마련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
- 표창종류중 표창장 상신에만 치우쳐 시민표창의 다양성 부족
⇒ 감사장, 상장수여 대상 유공 한강자원봉사자 적극발굴 및 홍보

III 세부추진계획

1 한강자원봉사자 표창추천 기준 마련

	표창장	감사장	상장
추천대상	한강보존 및 이용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	물품기부, 재난·재해 복구활동 봉사단체 관리자 등의 감사대상 시민	활동평가회 등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원봉사자
추천시기 (표창시기)	5월/11월(6월/12월)	11월(12월)	11월(12월)
추천인원	개인 ○명, 단체 ○명	개인 ○명, 단체 ○명	개인 ○명, 단체 ○명
추천방법	자체 공적심의회 심사	자체 공적심의회 심사	활동평가회 심사위원단 심사
추천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추천일 기준 한강에서 2년 200시간 자원봉사(기준) ▶ 심사위원 4명의 합산 평균점수 70점 이상자 ▶ 활동기간·내용·지속성, 한강보존 및 이용활성화 관련 제도개선, 수범사례 창작(단순 장시간은 제한) ▶ 일반적 표창기준(붙임1 참고) 적합자에 한해 추천 		▶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

② 자체 공적심의회 운영

- 구 성 : 위원장 1명(본부장), 위원 4명(총무부장·운영부장·공원부장·시설부장)
- 시 기 : 5월/11월
- 임 무 : 심사기준[붙임2 참조]에 의거 표창대상자 선정·추천

③ 표창제도 및 표창자에 대한 홍보강화

- 공원별 참여 기업·학교·가족자원봉사단·봉사단체 등 대상 홍보
- 활동 계기이용 시민표창 제도소개로 표창대상자 적극 발굴(각 부서 협조사항)
- 표창 대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로 홍보강화

IV 주요 일정

- 시기별 행사계획(박람회,평가회) 수립.....5월/11월
- 자체 공적심의회 운영.....5월/11월
- 시 공적심의 의뢰.....5월/11월
- 표창수여.....6월/12월
- 표창대상자 홈페이지 게재 등.....6월/12월

붙임 1 : 시민표창 기준 1부.

2 : 한강자원봉사자 표창추천 기준 1부.

3 : 2013년 시민표창 운영계획(행정과) 1부. 끝.

붙임 1

시민표창 기준(행정과)

1. 법령에 따른 부자격자 제외

-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-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
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

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, 산업재해 명단,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

2. 일반적인 추천제한

-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(표창조례 제6조)
-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
-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(사회적 이슈,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)
-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
-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, 순서대로,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
-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
-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

붙임 2

한강자원봉사자 표창추천 기준

[표창장] : 한강보존 및 이용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 시민

심사영역	심사항목	심사착안사항	배점
활동현황 (30)	활동시간 (기본점수)	· 추천일 기준 한강에서 2년간 200시간 이상 활동 개인단체 ※ 활동시간 인증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검증 ※ 단순 양적인 시간보다 질적인 활동 고려	30
		· 기획 자원봉사, 프로그램 운영 등의 주도적 활동	10
참여·실현단계 (50)	주체성 (기본점수)	· 본부 측 프로그램 제공에 의한 참여활동	5
		· 프로그램 수행과정 및 한강 각종행사 참여도	35
	총실성 및 적극성 (가산점수)	· 한강 자원봉사 활동분야 관련 지식습득 여부 · 프로그램 관련 자체 활동준비과정 · 활동평의회시 우수활동 입상자 등	
평가단계 (20)	귀감정도 (가산점수)	· 봉사자, 단체 구성, 봉사 내용 등이 사회 귀감(언론소개, 타봉사자·단체의 평가, 재능봉사, 기부 등)이 되는지의 여부	10
	기여도 (가산점수)	· 한강보존 및 이용활성화 관련 기여정도 (생태·수질개선, 한강숲조성, 시민중심 한강문화 조성, 재난·재해복구 및 자원봉사 모델 등)	10
총 점			100점

※ 표창추천 시기별 자원봉사 활동상황에 따라 추천 대상자수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및 심사위원 4명의 합산평균점수 70점이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자원봉사자 추천

[감사장] : 물품기부, 재난·재해 복구활동 등 감사의 뜻을 전달

심사항목	심사착안사항	배점
활동시간	· 추천일 기준 2년간 200시간 이상 활동한 개인 또는 단체 (사회적 이슈, 기타 특별공적은 제외)	30
총실성 및 적극성	· 활동 참여도(참여인원, 재원투입, 활동횟수 등) · 한강 자원봉사 활동분야 관련 지식습득 여부	30
기여도	· 봉사자, 단체 구성, 봉사 내용 등이 사회 귀감(언론소개 등)이 되는지의 여부 · 한강보존 및 이용활성화 관련 기여정도 (생태·수질개선, 한강숲 조성, 시민중심 한강문화 조성, 재난·재해복구 등)	40
총 점		100점

※ 표창추천 시기별 자원봉사 활동상황에 따라 추천 대상자수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및 심사위원 4명의 합산평균점수 70점이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자원봉사자 추천